

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법」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및 같은 법 제117조(과태료) 위반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(과태료부과)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, 폐문부재, 수취인부재, 수취거부, 수취인불명, 거주불명,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제2항, 제3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4. 4. 3.

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

(관인생략)

- 제 목 : 도로법(운행제한)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 - 처분근거 :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제2항, 제3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
 - 공고기간 : 2024. 4. 3.~2024. 4. 17.(15일간)
 - 공고내역 :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
 - 공고내용
 - 가.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(053-605-6068)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기 바랍니다.
 - 나.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(이의제기)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 - 다.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.
 -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
 - 공 고 방 법 : 대한민국 전자관보 (<http://www.gwanbo.go.kr>)
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(<http://www.roadfine.go.kr>)
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(<http://www.molit.go.kr>)
 - 문 의 전 화 :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(053-605-6068)
 - 주 소 :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(우편번호 : 41468)
- 붙임 : 공시송달 대상 명세서 1부. 끝.